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(천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35 발의연월일: 2024. 11. 20.

발 의 자: 천준호 • 박성준 • 박상혁

추미애 · 이강일 · 한민수

박홍배 • 강선우 • 정을호

민홍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도로의 손괴, 교통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고속 도로등에서 교통이 위험 또는 혼잡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위험 또는 혼잡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 및 원 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 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현재 제한된 경찰 인력만으로 여러 광범위한 고속도로에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,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고용한 '안 전순찰원'으로 하여금 위험방지 등의 조치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 는데, 이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.

이에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서 제58조에 따른 위험방지 등의 조치를 「도로법」 제57조의2에 따른 안전순찰원(이하 "안전순찰원"이라

한다)에게 경찰공무원을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58조의2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천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의안번호 제572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8조의2(경찰공무원 보조자에 의한 위험방지 등의 조치) ① 경찰청 장은 고속도로에서 제58조에 따른 위험방지 등의 조치를 「도로 법」 제57조의2에 따른 안전순찰원(이하 "안전순찰원"이라 한다)에 게 다음 각 호의 임무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.

- 1.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자동차 통행의 일시 제한
- 2. 사고 차량 및 탑승자의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조치
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안전순찰원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위험방지 등의 조치를 수행하는 안전순찰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라 위험방지 등의 조치를 수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.
- ⑤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방지 등의 조치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순찰원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

수 있다.

- ⑥ 제1항에 따라 위험방지 등의 조치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 순찰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 원으로 본다.
- ⑦ 제5항에 따른 안전순찰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의 내용·주기·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58조의2(경찰공무원 보조자에 의한 위험방지 등의 조치) ①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서 제58 조에 따른 위험방지 등의 조치를 「도로법」 제57조의2에 따른 안전순찰원(이하 "안전순찰원"이라 한다)에게 다음 각 호의 임무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. 1.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자동차 통행의 일시 제한 2. 사고 차량 및 탑승자의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조치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안전순찰원의 조치에 따라 위험방지 등의 조치를 수행하는 안전순찰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.

- ④ 제1항에 따라 위험방지 등의 조치를 수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.
- ⑤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방지 등의 조치의 보조 업 무를 수행하는 안전순찰원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.
- ⑥ 제1항에 따라 위험방지 등의 조치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순찰원은 「형법」 제1 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- ① 제5항에 따른 안전순찰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의 내 용・주기・방법 등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